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9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이은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오중석, 송아량, 이승미, 우형찬,
추승우, 성중기, 송도호, 김태호,
정진철, 이영실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가. 보도상영업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법률위임 없이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부 조항이 있음.
- 나. 이에 점용허가 갱신시 제조전 화재조서 제출 조항, 대부 계약시 손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및 그 증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점용허가 갱신 시 제출하도록 한 제조전 화재조서는 운영자가 동일할 경우 최초 제출한 제조전 화재조서로 갈음하도록 함(안제3조 제6항)
- 나.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첨부토록 한 내용 삭제(조례 제6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,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점용허가) ①~⑤ (생 략)</p> <p>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3조(점용허가) 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같음하되,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대부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<u>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.</u> <u>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(생 략)</p>	<p>제6조(대부계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